



# 플랫폼 운송사업의 소비자 안전 입법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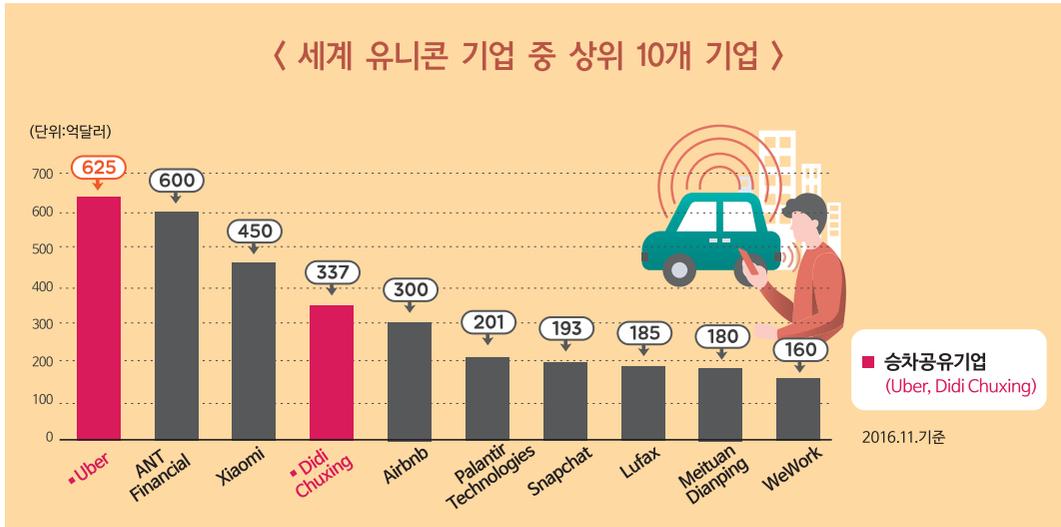
2019. 9. 3. 제101호

## 최신 외국입법정보

발행처 국회도서관 | 발행인 허용범 | 작성자 김정임\*

- 최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이른바 ‘운탕호법’이 제정되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리운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한편,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승차공유사업이 국내에도 등장하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 승차공유사업은 앱(플랫폼)을 사용하여 소비자와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모빌리티사업을 의미하며, 우버·타다·차차 등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 이러한 모빌리티사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종사자 및 승차공유 운전종사자의 범죄 발생과 같은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소비자 안전측면에서 대리운전과 승차공유 운전종사자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상황에서 검토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 세계 유니콘 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 〉



출처: 「ライドシェア新法の提案(2018.5.8)」  
 유니콘 기업: 기업가치 10억달러(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 시사점

-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승차공유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보험·자동차 관리·소비자 안전·관련 운전종사자 관리 및 운임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운전종사자에 대한 관리는 소비자 안전 측면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는 분야이다.
-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승차공유사업을 택시와 구분하여 별도의 ‘운송네트워크사업(TNC)’으로 규정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민관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범죄·형법상 일부범죄·도박죄·가정폭력범죄·음주(마약 포함)운전 범죄 경력자를 운전종사자로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본은 자가용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를 구매하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 등을 반영하여, 국토교통성은 모바일 승차공유사업을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라고 인정하였다<sup>1)</sup>.

1) 道路運送法における許可又は登録を要しない運送の態様について(平成30年3月30日 国自旅 第338号).



출처:「라이드シェア新法」の提案(2018.5.8.)

- 또한 대리운전에 관한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정하여 소비자 안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대리운전사업과 모빌리티 승차공유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비자 안전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범죄경력 확인 등 해당 운전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sup>2)</sup>.
- 따라서 대리운전자 혹은 승차공유 운전종사자에 대한 신원조회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운전종사자와 고용 및 계약체결 등을 금지하는 한편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입법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현재 2016년에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의안번호 2001735)이 계류 중이다(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미국 캘리포니아주 「Public Utilities Code」(공공시설법) Article 7.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제7절 운송네트워크사업)

-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승차공유사업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sup>3)</sup>. 승차공유 운전자의 신원조회를 강제하고 있으며, 주에 따라서는 지문검사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송네트워크사업자가 운전자의 범죄경력을 조사하고, 규정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계약 및 고용 등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5445.2(a)(1)~(3))<sup>4)</sup>.
- 운송네트워크사업자가 운전자의 범죄경력을 조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여러주 및 사법기관의 범죄기록을 담고 있는 공용 또는 상용 데이터베이스와 연방법무부 성범죄자 공개사이트 등을 폭넓게 설정하고 있으며, 계약 등이 금지되는 범죄경력으로 연방법무부 성범죄자 공개 웹사이트에 등록된 성범죄, 형법상 유죄인 범죄(폭력적 중범죄 등), 경범죄 또는 도박·가정폭력범죄·음주(마약 포함)운전 범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일본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일본은 대리운전을 주로 야간에 취객을 대신하거나, 그 외에 사람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상적인 상태로 수반용 자동차<sup>5)</sup>를 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일본은 대리운전사업자에게 관할 공안위원회의 인정(認定)을 받도록 하고, 대리운전사업자와 운전종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결격요건을 부과하고 있다(제3조).

1)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최근 2년 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25조제2항제2호나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행위 및 그 밖의 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영업폐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제24조제1항제3호), 영업폐지 명령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제31조).

3)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 (TNC) Legislation," 17 June 2017. Transportation Policy Research Center, Texas A&M Transportation Institute(<https://policy.tti.tamu.edu/technology/tnc-legislation/> 2019.8.19. 접속)

4) 음주운전시 운전대행자를 지정하는 '운전자 지정제도(Designated Driver Program)'를 두고 있으며, 이 운전자 지정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5) 수반용 자동차는 자동차 운전대행업에서 대리운전자 복귀를 위해 수반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국내현황

- 우리나라는 택시 관련 여객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여객법은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자격 외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제24조제3항, 제4항).

제24조제3항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제24조제3항제2호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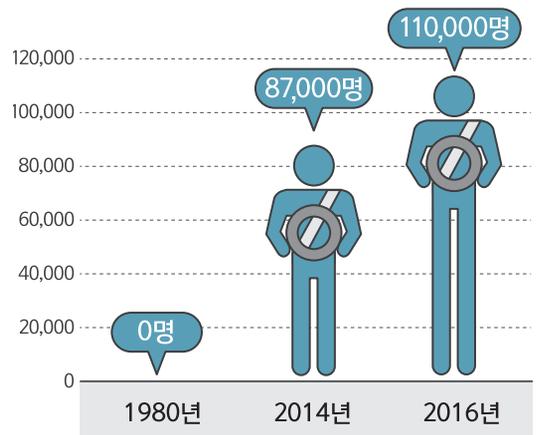
-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범죄경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동조제5항). 그러나, 대리운전사업은 본질적으로 여객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고<sup>6)</sup>, 승차공유사업은 여객운송사업이기는 하지만 택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상운송을 하도록 허용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업은 택시에 적용되는 여객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장하는 개별법이 부재한 상태이다.



제목: 승차공유 연관어 분석

- 분석어: 승차공유+플랫폼 택시+타다+택시
- 분석기간: 2018.7.1. ~ 2019.8.21.
- 국회도서관 Argos 이용 빅데이터 분석결과

### ▶ 대리운전기사 증가추이



출처: 산업경제분석, “대리운전 서비스시장의 이슈와 과제”(2016.12.)

6) 육상운송지원 서비스업인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대리운전기사에 해당한다(2019년 귀속업종 분류코드 2019.6.).

##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입법례의 원문과 번역문

### 「Public Utilities Code」

ARTICLE 7.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

#### §5431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following terms have the following meanings:

(a) “Participating driver” or “driver” means any person who uses a vehicle in connection with a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s online-enabled application or platform to connect with passengers.

#### §5445.2

(a) (1) A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shall conduct, or have a third party conduct, a local and national criminal background check for each participating driver that shall include both of the following:

(A) The use of a multistate and multijurisdiction criminal records locator or other similar commercial nationwide database with validation.

(B) A search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 site.

(2) A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shall not contract with, employ, or retain a driver if he or she meets either of the following criteria:

(A) Is currently registered on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 site.

(B) Has been convicted of any of the following offenses:

(i) A violent felony, as defined in Section 667.5 of the Penal Code.

(ii) A violation of Section 11413, 11418, 11418.5, or 11419 of the Penal Code.

(3) A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shall not contract with, employ, or retain a driver if he or she has been convicted of any of the following offenses within the previous seven years.

(A) Misdemeanor assault or battery.

(B) A domestic violence offense.

(C)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D) (4)생략

###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법」

제7절 운송네트워크사업자

#### 제5431조

이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참여 운전자” 또는 “운전자”는 운송네트워크 사업자의 온라인 지원 응용프로그램 또는 플랫폼을 통하여 승객과 연결되는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제5445.2조

(a) (1) 운송네트워크사업자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하여 각 참가운전 종사자에 대한 지역 및 전국 범죄배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A) 다주(多州) 및 다중관할 범죄기록 검색기 또는 기타 유효한 유사 상업용 전국 데이터베이스 사용.

(B) 미국 법무부 성범죄자 공개웹사이트 검색.

(2) 운송네트워크사업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종사자와 계약하거나 고용하거나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

(A) 현재 미국 법무부 성범죄자공개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B) 다음 각 목과 같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i) 형법 제667.5조에 정의된 폭력적인 중범죄.

(ii) 형법 제11413조, 제11418조, 제11418.5조 또는 제11419조를 위반하는 행위.

(3) 운송네트워크사업자는 지난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위반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종사자와 계약하거나 고용하거나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

(A) 경범죄 또는 폭력.

(B) 가정폭력범죄.

(C) 음주 또는 마약에 취한 운전

(D) (4)생략

##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自動車運転代行業の要件)

**第三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自動車運転代行業を営んではならない。

一 成年被後見人若しくは被保佐人又は破産者で復権を得ないもの

二 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又は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て罰金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経過しない者

三 最近二年間に第二十三条第一項、第二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十五条第二項第二号若しくは第三号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者

四 集团的に、又は常習的に暴力的不法行為その他の罪に当たる違法な行為で国家公安委員会規則で定めるものを行う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る者

(運転代行業務の従事制限)

**第十四条** 第三条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運転代行業務従事者となってはならない。

2 自動車運転代行業者は、前項に規定する者を運転代行業務に従事させてはならない

(営業の停止)

**第二十三条** 公安委員会は、自動車運転代行業者又はその安全運転管理者等若しくは運転代行業務従事者がこの法律若しく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指示に違反したとき、(...)、当該自動車運転代行業者に対し、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で期間を定めて、当該自動車運転代行業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営業の廃止)

**第二十四条** 公安委員会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があ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自動車運転代行業の廃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三 前二号に掲げる者のほか、第三条各号(第六号及び第七号を除く。)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自動車運転代行業を営んでいるもの(第四条の認定を受けている者を除く。)

2 公安委員会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あらかじめ、国土交通大臣に協議し、そ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일본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의 요건)

**제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대행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최근 2년 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25조제2항제2호나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행위 및 그 밖의 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운전대행업무의 종사제한)

**제14조**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대행업무종사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운전대행업자는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운전대행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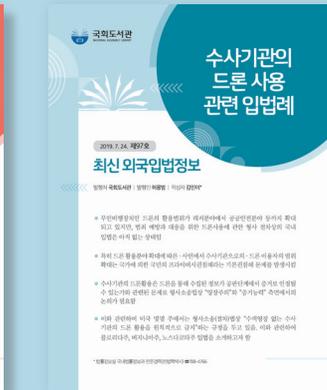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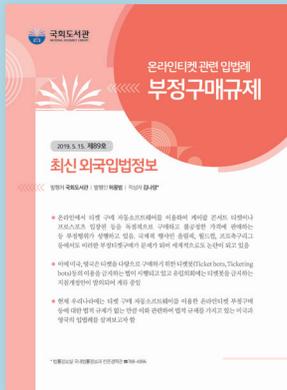
**제23조** ①公安위원회는 자동차운전대행업자 또는 그 안전운전관리자 등이나 운전대행업무종사자가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기초한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를 위반한 때, (...) , 해당 자동차운전대행업자에 대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운전대행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의 폐지)

**제24조** ①公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대행업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3. 전2호에 열거하는 자 외에, 제3조 각 호(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동차운전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제4조의 인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②公安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대신과 협의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은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매주 발간하고 있습니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